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생산공장 지역 추가 등>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96호)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43호)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49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개요	1
--------------	---

[김종양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승규의원안]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송옥주의원안]

1. 제안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Ⅱ. 검토의견 6

1.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지역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 있는 금속 취급 공장 지역 추가(김종양의원안,강승규의원안,
송옥주의원안) 6
2.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를 포함한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
(송옥주의원안) 15
3. 특정대상소방물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제도 신설 및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시행제도 도입(김종양의원안) 20
4.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 추가(강승규의원안) 27

I. 개 요

【김종양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7. 10.

다. 회 부 일 : 2024. 7.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명령 등을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대사회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리튬이온전지 등 새로운 유형의 화

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소방청예규)에서 화재 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대상물 중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화재안전시행계획에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6호).

나. 소방관서장은 매년 화재 위험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강승규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7. 15.

다. 회 부 일 : 2024. 7.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와의 소통 문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더 커졌으며, 리튬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23조).

【송옥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8인

나. 제 안 일 : 2024. 9. 13.

다. 회 부 일 : 2024. 9.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동 지구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의 소방시설로는 진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 취급 및 저장 외 이송 기준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10호 신설).

II. 검토의견

1. 화재예방강화지구예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지역 또는 화재 발
생 가능성 있는 금속 취급 공장 지역 추가(김종양의원안, 강승규의
원안, 송옥주의원안)

개정안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거나(김종양의원안 제18조제1항제6호, 송옥주의원안 제18조제1항제10호),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강승규의원안 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김종양의원안	강승규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제18조(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을 화 재 예방 강화 지 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 다.	제18조(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 ----- ----- ----- ----- ----- ----- ----- ----- -.	제18조(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 ----- ----- ----- ----- ----- ----- ----- ----- -.	제18조(화재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6. <u>석유화학제</u> <u>품을</u> 생산하 는 공장이 있 는 지역	6. <u>석유화학제</u> <u>품 또는 리튬</u> <u>이온전지를</u> -- ----- -----	6. (현행과 같음)	10. <u>리튬이온전</u> <u>지를</u> 생산하 는 공장이 있 는 지역
		7. <u>화재 발생</u> <u>가능성이 있</u> <u>는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u> <u>금속을 취급</u> <u>하는 공장이</u> <u>있는 지역</u>	
7. ~ 10. (생 략)	7. ~ 10. (현행 과 같음)	8. ~ 10. (현행 제 7 호 부 터 제9호까지와 같음)	
		11. ----- -----제10 <u>호</u> ----- ----- ----- ----- ----- ----- -----	11. ----- -----제1 <u>0호까지에</u> - ----- ----- ----- ----- ----- ----- -----
② ~ ⑥ (생	② ~ ⑥ (현	② ~ ⑥ (현행	② ~ ⑥ (현

략)	행과 같음)	과 같음)	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장·창고 밀집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및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¹⁾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8조제1항),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158개임.

1) 화재예방강화지구 개요는 [참고 1] 참조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현황>

(2023. 12. 31. 기준)

현행법 제18조제1항 요건에 따른 구분	지정 수
시장지역 §18(1)	96
공장창고 밀집지역 §18(2)	6
목조건물 밀집지역 §18(3)	18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18(4)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18(5)	19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18(6)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18(7)	4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18(8)	-
물류단지 §18(9)	4
소방관서장 지정 §18(10)	7
계	158

(자료: 소방청)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하며(제18조제3항), 그 결과에 따라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명할 수 있고(제18조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52조 제2항제2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서는 누구든지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

는 행위 등이 제한되고(제17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제52조제1항제1호).

또한,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²⁾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제18조제5항),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등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제18조제6항), 소방설비등³⁾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시·도의 조례로 지원할 수 있음(제19조제3항).

한편, 소방청은 소방청예규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규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⁴⁾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시설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⁵⁾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음. 2024년 현재 전국에 총 7,083개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전지관련 공장’ 25개를 포함한 공장은 871개 소임⁶⁾.

2)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 소방설비등 : 소방설비(소화·경보·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기타설비), 안전설비(예방설비, 대응설비, 피난방화설비)

- 조례로 지원하는 소방설비등의 종류는 [참고 2] 참조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대상소방물의 종류: [참고 3] 참조

5)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관련 주요 내용은 [참고 4] 참조

6)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전지관련 공장) 지정 현황은 [참고 5] 참조

<2024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2023. 12. 31. 기준)>

계	공동주택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7,083	63	245	133	7	638	38	1,175
	공장	창고	위험물	항공	동식물	교정군사	자원순환
	871	220	123	10	3	4	20
	교육	노유자	수련	운동	업무	숙박	위락
	73	730	8	14	98	489	33
	방송통신	발전	관광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
	19	40	4	69	5	15	1,936

(자료: 소방청)

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발화원인으로는 리튬이온배터리(1차전지) 폭열·폭발로 추정되고 있음⁷⁾. 리튬이온배터리로부터 발생하는 화재는 충전된 전기에너지가 미상의 원인으로 양극(+,-)

7) 화성 (주)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개요(자료: 소방청)

- 일시: '24. 6. 24.(월) 10:31 ~ 25.(화) 08:48
- 장소: (주)아리셀 공장(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12길 33)
- 피해현황
 - (인명피해) 총 31명(사망 23, 중상 2, 경상 6)
 - (재산피해) 816,909천원(부동산 457,634 / 동산 341,275)
- 발화지점: 제3동 2층 작업장 화물용 E/V 앞 적재 트레이 내 배터리
- 발화원인: 리튬배터리 폭열·폭발(열폭주) 추정

의 흐름이 발생되어 화학적 반응에 의한 순간증폭형(열폭주) 화재 양상을 보이기에 초기 소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⁸⁾.

개정안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와 같이 발화(發火) 시 대규모 화재로 변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들의 입법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8조제1항 제10호),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금속성 물질과 같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위험물 제조소등

8) 출처: 소방청, 화성공장 화재 사고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개선 방향, 국회의원 용혜인 주최, 아리셀 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토론회 발제문, 2024. 8. 12, 14면.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비고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속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

설치허가를 받고 있어 현행법에 따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제18조제1항제5호),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개정안과 같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모두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진압 장비가 충분히 개발·보급되지 않은 물질에는 ‘리튬이온전지’ 외에 다른 물질도 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률에 특정 물질만을 규정하는 것은 법 적용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대상에 리튬이온전지 공장 전체를 규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속성물질)은

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종류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화재위험도가 높은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지역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를 포함한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송옥주의원안)

개정안은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를 포함한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외에 이송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송옥주의원안 제17조제5항).

현행	송옥주의원안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 ④ (생략)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목탄 및 금속류(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를 포함한다)----- -----·취급 및 이송----- -----.

현재 화재와 관련한 안전관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로 인해 화재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한 저장·취급·운반 및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열이나 전기를 잘 전도하고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이 풍부하며 특수한 광택을 가진 물질인 금속 중 연소·폭발의 위험성을 띠는 금속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10)), 위험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¹¹⁾).

한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량 보관 시에는 위험요소가 없으나 일정 수량 이상으로 모였을 경우 점화원에 의해 발화될 시 일반적인 가연물보다 연소 확대가 빠르고 높은 열량을 발생하여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물품을 특수가연물(特殊可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리튬류의 금속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속성물질 중 '알칼리금속')에 해당함.

- (제2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하기 쉬운 금속의 분말(알루미늄분, 아연분 등)과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는 마그네슘, 철분 등
- (제3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연발화성물질(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과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금속성물질(알칼리금속, 알칼리류 금속 등)

燃物)로 규정하고, 법률에서는 특수가연물의 예시로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목재를 들면서, 특수가연물의 구체적인 종류 및 저장·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¹²⁾¹³⁾.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전지를 포함한 금속류를 특수가연물의 예시규정으로 추가하면서 특수가연물의 이송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전기차의 보급과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에서 볼 수 있듯¹⁴⁾ 리튬이온배터리로부터 발생하는 화재는 충전된 전기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화재를 지속시키는 등 순간증폭형 화재 양상을 보이기에 초기 소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12)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특수가연물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품명		수량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벼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13) 특수가연물 개요는 [참고 6] 참조

14) 화성 (주)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개요는 각주 7) 참조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 최근 5년간 전기차 보급 및 화재 현황 (2019년~2023년)>

구 분	차량등록 건수 (%)		차량화재 건수 (1만대당 건수)	
	전체	전기차	내연차	전기차
2019년	23,677,366	89,918(0.38%)	4,707 (1.98)	3 (0.33)
2020년	24,365,979	134,962(0.55%)	4,547 (1.87)	11 (0.82)
2021년	24,911,101	231,443(0.93%)	4,506 (1.83)	24 (1.04)
2022년	25,503,078	389,855(1.53%)	4,625 (1.84)	43 (1.12)
2023년	25,949,201	543,900(2.10%)	4,724 (1.86)	72 (1.32)

(자료: 소방청)

< 국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 (누적 대수)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5월
충전기 (단위:기)	계	44,792	64,188	106,701	205,205	240,695
	(해당 년도)	(-)	(19,396)	(42,513)	(98,504)	(35,490)
	급속	7,396	9,805	15,067	20,737	25,548
	(해당 년도)	(-)	(2,409)	(5,262)	(5,670)	(4,811)
	완속	37,396	54,383	91,634	184,468	215,147
	(해당 년도)	(-)	(16,987)	(37,251)	(92,834)	(30,679)

*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go.kr) [환경부 제공]

다만, 개정안은 개정안을 입법할 실익, 현행 법령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먼저,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를 특수가연물에 포함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특수가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리튬전지 등 반응성 전지는 특수가연물에 포함된다고 보이나, 아리셀 공장화재 관련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¹⁵⁾에서 정부가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면서 이를 현행법령 체계에 따라 시행령 [별표 2]에 동 내용을 규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리튬류의 금속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험물질로 분류되어¹⁶⁾ 저장·취급·이송·운반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⁷⁾.

15) 관계부처 합동 전기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2024. 9. 9) 주요내용은 [참고 7] 참조

16) 리튬류의 금속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다류로 분류되어 관리됨.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장(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은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3장(제14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은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제20조부터 제21조까지)은 위험물의 운반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특정대상소방물의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제도 신설 및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시행제도 도입(김종양의원안)

개정안은 현재 소방청 예규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화재 위험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김종양의원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현행	김종양의원안
<신설>	<u>제18조의2(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지정) ① 소방관서장은 매년 특정대상소방물 중 화재의 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지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신설>	<u>제18조의3(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u>

· 시행)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
을 위하여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화재예방·대비 및 대응계획

3.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
보급에 대한 사항

4. 우수 대상처 포상 및 정보관
리에 대한 사항

5. 기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
항 외에 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2조(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및
화재안전시행계획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수립된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및 화재
안전시행계획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수립된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및 화재안전시행계획으로 본다.
--	--

현행법은 국가에게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제3조18)),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제24조제1항).

소방청은 이를 바탕으로 소방청예규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¹⁹⁾에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을 "화재안전 중점

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9)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4] 참조

관리대상²⁰⁾”으로 정의하고(제2조제1호),

소방기관의 장에게 화재위험성,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제1항).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화재안전시행계획에는 ①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② 화재안전조사, 소방교육·훈련, 현장 지도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예방·대비 및 대응계획, ③ 우수 대상처 포상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 ④ 기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제8조).

개정안은 소방청 예규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근거 및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내용에 현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사항 외에 ‘새로운 화재진화 기술 이용·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대사회의 기술진보에 따라 물이나 소화기 등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20)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기준은 [참고 9] 참조

다만, 개정안 심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지 여부는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지정 제도의 특징, 법률에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 관련 규정을 둘 경우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현행법(제3조)의 취지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각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도 특히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화재 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소방교육·훈련, 현장 지도 점검 등 소방관서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것임²¹⁾.

소방청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경

21) 우리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집행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75조), 이와 같은 집행명령은 입법자가 제시한 행위지침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칙을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문적·기술적 규정은 현장 사정에 정통한 해당 집행기관이 규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한수웅, 헌법학(제12판), 2022., 1265-1268 참조).

우 소방관서의 관리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대상 수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대상의 선택과 집중이 저해될 수 있고²²⁾, 소방청 예규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에 따라서 소방서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바, 현행 예규를 법률로 상향하는 경우 행정의 경직성이 높아져서 소방안전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³⁾.

둘째, 개정안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화재진화기술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일부로 현행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예를 들면 전국 소방서별 평균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30개소가 있는데, 같은 규모의 전 통시장이 군지역 소방관서에 있을 경우와 서울지역 소방관서에 있는 경우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의 중요도가 다르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23) 소방청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물은 현재와 같이 소방청 예규로 정하는 경우 관할 소방관서의 장이 화재위험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중 화재예방 및 대응이 특별히 더 필요한 시설을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동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물이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서 동일하게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밝힘.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업무 종합계획 내용(제6조)>

1.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 소방전문인력 양성
5.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영 제1조의3제2항)
 -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4.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 추가(강승규의원안)

개정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에 외국인근로자를 추가하려는 것임(강승규의원안 제23조).

현행	강승규의원안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 -----장애인,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²⁴⁾ 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 -----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화재 안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소방관서장이 소방용품을 제공하거나 소방시설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대상을 화재안전취약자²⁵⁾로 규정하고, 화재안전취약자의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예시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들고 있음.

개정안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예시에 외국인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임.

최근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는데²⁶⁾,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소통 문제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커졌다는 점²⁷⁾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화재안전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추가할지 여부는 이 조문의 1차 목적이 화재를 예방하는 것에 있다는 점과 개정안의 취지가 공장이나 산업시설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보임.

이와 관련해서 소방청은 이 조문의 목적은 화재안전취약자의 ‘거주지’를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을 제공하거나 소방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거주지의 안전성이 어린이, 노

25) 화재안전취약자 현황은 [참고 9] 참조

26) 자세한 내용은 각주 7) 참조

27)-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아리셀 공장 인명피해 : 사망자 23명(내국인 5, 외국인 18), 부상자 8명(내국인 8) (자료: 소방청)

인, 장애인에 비해 낮고,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지는 고용된 기업 등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대구광역시는 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용품과 소방시설의 기호나 표기는 만국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실히 시행하는 경우 성인인 외국인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51

화재예방강화지구(요약)

(자료: 소방청)

□ 일반현황

- **(관련근거)** 화재예방법 제17조, 제18조, 소방기본법 제10조
- **(지정권자)** 시·도지사
 - ※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
- **(지정대상)**
 -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⑤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⑥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⑧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 ⑩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화재예방 및 대응

-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행위제한(누구든지): 위반자 300만원 과태료
 - ①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②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 ③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
- 화재안전조사 : 연 1회 이상 ○ 소방훈련·교육 : 연 1회 이상
- 소방활동자료조사 : 연 1회 이상
- 소방설비등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 ①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설비등 설치지원
 - ②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 설치

참고2

조례로 지원하는 소방설비등의 종류

(자료: 소방청)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	소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 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 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 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 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 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 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 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 설비	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	예방 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대응 설비	방수총, 대응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 를 포함한다)
	피난방 화설비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 시도조례 : 17개(세종시는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없음)

참고3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자료: 소방청)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30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① 공동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 ④ 종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운수시설 ⑦ 의료시설
- ⑧ 교육연구시설 ⑨ 노유자시설 ⑩ 수련시설 ⑪ 운동시설
- ⑫ 업무시설 ⑬ 숙박시설 ⑭ 위락시설
- ⑮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⑯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⑱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⑲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⑳ 자원순환 관련 시설
- ㉑ 교정 및 군사시설 ㉒ 방송통신시설 ㉓ 발전시설
- ㉔ 묘지 관련 시설 ㉕ 관광휴게시설
- ㉖ 장례시설(「의료법」 제36조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시설은 제외)
- ㉗ 지하가(지하상가/터널)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㉘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
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
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50m 이상인 것
- ㉙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㉚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 의무화 용도 및 주택부대시설 제외)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참고 4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요약]

(자료: 소방청)

□ 일반현황

-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시설
 - 前 대형화재취약대상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산피해 저감보다 인명피해 저감에 중점을 두고 선정
- **(관련근거)** 행정규칙으로 지정*
 -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예규, '21.12.27. 제정)
- **(지정권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평가* 후 위험성 등을 고려 심의회의결(5~9명, 소방공무원으로 구성) 결정(연 1회)
 - 화재이력 및 안전관리, 이용자 특성, 위험물 저장·취급, 점화원 관리, 소방시설, 소방관서와 거리,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 등 고려하여 선정
 -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수지정*, 심의지정** 대상으로 구분
 - * 대형건축물, 위험물시설, 숙박,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 노래방, 영화관 등)
 - ** 고층건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공장·창고 등
- **(지정대상)** 총 6,849개('23.1.1. 기준)

구분	합계	필수지정	심의지정
수량	6,849	2,394	4,455

□ 화재예방 및 대응

-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소방관서장) 화재예방·대응계획 시행(매년)
 - 화재안전조사, 소방훈련·교육 등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시행(소방서별)
 -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기준

○ 필수지정

용도별 (대상)	선정 기준	
1. 대형 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도(道) 100만 시	①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건축물 ②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아파트 및 창고 제외) ③ 연면적 10만㎡ 이상 창고
	특별자치시, 도(道) 100만 미만 시	④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 ⑤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도(道)의 군(郡)	⑥ 20층 이상 ⑦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아파트 제외)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의 시	① 자체소방대를 설치 중 화학소방자동차 2대 이상 설치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	② 지정수량의 합이 3,000배 이상
3. 의료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 100만 시	①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이고 병상이 400개 이상 ②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이고 병상이 200개 이상 ③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이고 병상이 200개 이상
	도(道) 100만 미만 시	④ 종합병원으로 5층 이상이고 병상이 200개 이상 ⑤ 요양병원으로 5층 이상이고 병상이 150개 이상 ⑥ 정신의료기관으로 5층 이상이고 병상이 150개 이상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	⑦ 종합병원으로 3층 이상이고 병상이 100개 이상 ⑧ 요양병원으로 3층 이상이고 병상이 100개 이상 ⑨ 정신의료기관으로 3층 이상이고 병상이 100개 이상
4. 숙박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 100만 시	① 5층 이상으로 객실이 200개 이상(고시원 제외)
	도(道) 100만 미만 시	② 5층 이상으로 객실이 150개 이상(고시원 제외)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	③ 3층 이상으로 객실이 100개 이상(고시원 제외)
5. 노유자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 100만 시	① 5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이고 수용인원 200인 이상

6. 종이용업소	특별자치시 도(道) 100만 미만 시	② 3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고 수용인원 150인 이상
	도(道)의 군(郡)	③ 2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인 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道) 100만 시	①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업종* 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고시원이 입주한 건축물 ③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10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특별자치시 도(道) 100만 미만 시	④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업종* ⑤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6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도(道)의 군(郡)	⑥ 한 개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업종* ⑦ 영화상영관으로 상영관이 2개 이상 또는 지하층에 입주한 건축물

◦ 필수 지정대상 : 소방기관의 장이 당연 지정하는 대상, 다만 선정 기준에 적합한 특정 대상(용도)별 10개를 넘을 때에는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대상(용도)별 10개만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0개만 지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심의지정 대상

용도별 (대상)	선정 기준	
1. 고층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道) 시	①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도(道)의 군(郡)	② 16층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음>	㉠ 건축물 외장재를 가연성 외장재로 시공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을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 ㉡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 주상복합건축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2. 판매시설	특별시, 광역시, 도(道) 100만 시	①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연면적 40,000㎡ 이상
	도(道) 100만 미만 시	②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연면적 20,000㎡ 이상
	특별자치시 도(道)의 군(郡)	③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연면적 10,000㎡ 이상
3. 복합건축물	특별시, 광역시, 도(道) 100만 시	①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
	특별자치시, 도(道) 100만 미만 시	② 연면적 4만㎡ 이상인 건축물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
	도(道)의 군(郡)	③ 연면적 2만㎡ 이상인 건축물 (주상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
4. 지하상가	특별시, 광역시 도(道) 100만 시	① 연면적이 4,000㎡ 이상인 지하상가
	특별자치시, 도(道) 100만 미만 시, 도(道)의 군(郡)	② 연면적이 2,000㎡ 이상인 지하상가
5. 다중이용업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道)의 시	① 한 개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도(道)의 군(郡)	② 한 개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6. 공장 및 창고	①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공장 ② 연면적이 30,000㎡ 이상인 창고	
7. 기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화재위험성이 높은 경우 ②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 화재발생시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화재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위험물, LPG 등 가연성 물질을 다량 저장·취급하는 경우 ⑥ 특수가연물을 1천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 심의 지정대상 : 소방기관의 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대상

참고 5 '24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중 전지 관련 공장 지정 현황

(자료: 소방청)

시·도	중점관리				공장목록	비고
	계	1차	2차	1차·2차		
서울	0	-	-	-		
부산	0	-	-	-		
대구	4	-	4	-	① 엘 앤 에프 구지 1공장(2차) ② 엘 앤 에프 구지 2공장(2차) ③ 엘 앤 에프 구지 3공장(2차) ④ (주)SSLM(2차)	
인천	2	-	2	-	① 남동지식산업센터(2차) ② 주안제이타워 2차(2차)	
광주	1	-	1	-	① 세방리튬배터리(2차)	
대전	0	-	-	-		
울산	3	-	3	-	① 삼성 sdi(2차) ② 코스모화학 양극제(2차) ③ nvh코리아(2차)	
세종	0	-	-	-		
경기북부	0	-	-	-		
경기남부	0	-	-	-		
강원	0	-	-	-		
충북	3	-	3	-	① LG에너지솔루션(2차) ② 에이치그린파워(2차) ③ 솔라엣지테크놀로지스코리아(2차)	
충남	3	-	2	1	① 삼성 sdi(2차) ② SK온 서산공장(2차) ③ 비츠로셀(1차 및 2차)	
전남	3	-	3	-	① SNNC(2차) ② 광양포스코 MC머티리얼즈(2차) ③ 광양포스코 퓨처엠(2차)	
전북	4	-	4	-	① 한국 앤 캠퍼니(2차) ② 정석케미컬(2차) ③ 미원상사(2차) ④ 에스케시넥 실리스(2차)	
경북	1	-	1	-	① 현대성우솔라이트(2차)	
경남	0	-	-	-		
제주	0	-	-	-		
창원	1	-	1	-	① 세방전지(2차)	
계	25	0	24	1		

※ 2024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중점관리대상 7,083개소 / 공장 871개소 중 전지공장 25개소)

참고 6 특수가연물 개요

(자료: 소방청)

- (정의)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물품으로 품명별 지정수량 이상 가연물
- (근거) 화재예방법 제17조, 시행령 제19조, 별표 2·3

품명 및 수량	▶ 면화류(200kg 이상) ▶ 나무껍질 및 대팻밥(400kg 이상) ▶ 냇마 및 종이부스러기(1,000kg 이상) ▶ 사료(1,000kg 이상) ▶ 볏짚류(1,000kg 이상) ▶ 가연성고체류(3,000kg 이상) ▶ 석탄·목탄류(10,000kg 이상) ▶ 가연성액체류(2m³ 이상)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10m³ 이상) ▶ 고무류·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20m³ 이상) ▶ 고무류·플라스틱류 그밖의 것(3,000kg 이상)
저장취급 기준	▶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 금지표지 설치, 품명별로 구분하여 저장 ▶ 살수설비 등 설치 - 높이 15m 이하, 바닥면적 200m² 이하(석탄, 목탄은 300m² 이하) ▶ 그 밖의 경우 - 높이 10m 이하, 바닥면적 50m² 이하(석탄, 목탄은 200m² 이하)
처벌기준	▶ 저장, 취급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방법 제52조)
소방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 특수가연물 500배 이상 공장·창고 ▶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 : 특수가연물 750배 이상 공장·창고 ▶ 스프링클러 : 특수가연물 1천배 이상 공장·창고

※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에 따른 신고·허가 : 해당없음

* 화재예방법(22.12.1.)은 고무류를 특수가연물로 분류(합성수지류 → 고무류·플라스틱류)

참고 7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주요내용²⁸⁾

(자료: 소방청)

지금까지	앞으로는
I 전지 제품 및 공장 등의 관리기준 강화	
◆ ‘리튬 전지 제품’ 관리기준 미비 - 전지 제품, 군용 전지 등 관리 법·제도 미흡 ◆ ‘전지 공장’ 제도적 안전관리 미흡 - 화재 위험성보다 연면적 등 기준으로 관리 ◆ 화재위험시설 화재 안전성능 미흡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에 준불연재료 허용 등	◆ ‘전지 제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관리 - 군용 전지에 대해서도 관리기준 대폭 강화 ◆ ‘전지 공장’ 법·제도적 안전관리 강화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PSM 운영 강화 등 ◆ 화재위험시설 내화·방화성능 강화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모두 불연재료 사용 등
II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 전지 제품 화재안전 기술개발 미흡 - 전고체 전지 등 신소재·신기술 개발 미흡 ◆ 전지화재 적응성 높은 소화기술 미흡 - 소화약제·기기 및 시험·인증기준 개발 미흡 ◆ 전지화재 사전 감지 기술개발 미흡 - 오프가스 감지 센서, 감지시스템 등 부족	◆ 전지 제품 화재안전 신소재·기술 개발 - 전고체 전지, 단락방지 첨가제 등 기술 개발 ◆ 전지화재에 효과적인 소화기술 개발 - 금속화재 소화약제 개발 및 인증기준 도입 ◆ AI 기반 전지화재 감지시스템 개발 - AI, 센서 및 통합 화재 감지시스템 개발

28) 관계부처 합동,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2024/ 9.9.) 중 발췌

III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 급격한 화재 확산 시 근로자 대피 취약

- 대피유도시설, 피난유도설비 등 설치 미흡

◆ 화재·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미흡

- 전지 화재 특성 등을 고려한 대응체계 미흡

◆ 전지 화재를 고려한 대피체계 강화

- 비상대피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시각경보기 설치 등

◆ 화재·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개선

- 표준작전절차 정비 및 사고 대응체계 강화

IV 전지 공장 등의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안전교육 부족

- 교육 이수기록 유지 수준의 형식적 교육

◆ 위험물질 특성을 고려한 취급관리 미흡

- 물질별 취급방법, 사고 시 대응요령 마련 미흡

◆ 전지 공장 등에 대한 현장 관리 미흡

- 전지 공장 등의 점검 및 관리·감독 미흡

◆ 외국인 근로자 등 산업안전·소방교육 강화

-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등

◆ 위험물질 맞춤형 취급·관리 강화

- 위험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가이드 마련 등

◆ 전지 공장 등의 업체 관리·감독 강화

- 군용전지 관리실태 파악 및 정부품질보증 강화 등

참고 8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소방청 예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3. "등급의 분류"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의 결과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4. "화재위험성 평가"란 등급의 분류를 위하여 화재 이력,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도 특성에 따라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의 설치)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한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및 등급의 분류를 심의하기 위해 소방기관에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홀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계장(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심의 결과는 3년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위험성, 지역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과 같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관리한다.

②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소방기관의 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정한다.

제7조(등급의 분류) ① 제6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화재위험성을 평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에 따라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으로 분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성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화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화재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재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화재예방·대비 및 대응계획
3. 우수 대상처 포상 및 정보관리에 대한 사항
4. 기타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9

화재안전취약자 현황

(자료: 소방청)

□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 + 차상위계층 수급자(명))

계			기초생활			차상위		
소계	남	여	소계	일반	시설	소계	남	여
2,359,228	1,046,016	1,313,212	2,451,458	2,359,228	92,230	187,838	68,131	119,707

□ 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 분류·성별 현황(명)

총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2,641,896	1,529,806	1,112,090	978,634	584,195	394,439	1,663,262	945,611	717,651

- 장애 유형별 현황(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2,641,896	1,153,501	248,360	432,854	22,830	229,780	240,546	42,744	104,197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108,623	4,933	11,029	15,634	2,757	17,117		6,991

-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인 현황(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978,634	222,833	45,806	85,694	11,468	229,780	136,925	42,744	102,722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80,961	3,661	10,487	660	1,375	1,613		1,905

- 장애 유형별 심하지 않은 장애인 현황(명)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1,663,262	930,668	202,554	347,160	11,362	0	103,621	0	1,475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7,662	1,272	542	14,974	1,382	15,504		5,086

□ 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한부모 가족 현황(명)

합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모자 가족	청소년부자 가족
484,180	384,939	92,679	3,222	3,071	269

□ 4호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구분	합계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84세	85세 이상
합계	2,918,722	896,925	621,589	510,679	461,037	428,492
남자	986,586	417,087	241,109	153,037	100,588	74,765
여자	1,932,136	479,838	380,480	357,642	360,449	353,727

□ 5호 「다문화가족지원」에 따른 다문화가족

- 유형별 다문화 가구원 현황(명)

계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1,151,004	166,733	383,444	295,696	305,131